

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지원계획 3차 공고

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14조에 따라 산업부문 중소·중견기업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'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지원계획'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년 7월 1일
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

1. 사업목적

- 중소·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여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 혁신 유도

2. 지원대상

- 직전 5개년도('21~'25년) 중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300toe 이상 2,000toe 미만*인 중소·중견기업

* 연간 전력 또는 연료별 2천toe가 되는 사용량 : 전력(8,734MWh), 휘발유(2,570천L), 경유(2,220천L), LPG(부탄, 1,690천Kg), (B-C유) 2,010천L, 도시가스(LNG) 1,920천Nm³
한국에너지공단 EG-TIPS 홈페이지(<https://tips.energy.or.kr/popup/toe.do>) 계산기 참고

○ 제외대상

- 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 제32조 2항에 따라 5개년도('22~'26년) 내 의무진단을 받은 사업장 또는 받을 예정인 사업장
- 최근 5년간('21~'25년) 동일 사업내용으로 여타 정부·지자체 및 관련기관의 에너지진단 지원사업 수혜자 또는 참여 예정인 사업장

3. 신청기간 :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31일까지
(지원 개소 미달 시 다음 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)

4. 지원규모 및 지원한도

- 지원규모 : 1,350백만원 (사업장 총 270개 내외)
- 지원한도

연간에너지 사용량	지원금액*	지원규모**	지원 개소**
300toe 이상 ~ 2,000toe 미만	5 백만원 (정액)	1,350 백만원	270개소

* 진단완료 시 사업장 1개소당 5백만원 지급하며, 부가가치세는 참여사업주가 부담

** 총지원규모는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(사업 수요에 따라 총예산범위 내에서 산업진단과 개선이행을 교차 지원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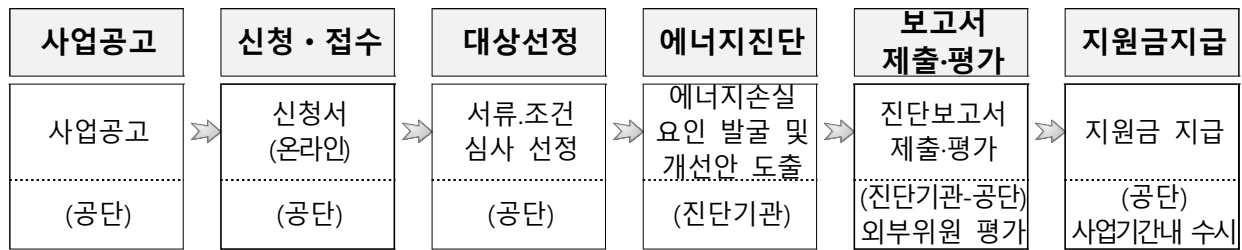
- 지원금은 지원 대상 사업장을 진단하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(이하 진단기관)에 지급

* 진단 소요일수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진단을 하거나, 진단 수행 중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지원 불가

5. 지원대상 선정

- 신청기간 내 지원개소를 초과하여 접수될 경우 지원대상은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
 - ① 중소·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(구. KEEP+) 참여사업장
 - * 참여사업장 중 지원대상 범위(300~2,000toe)에 해당되는 사업장만 지원 가능
 - * 본 공고 신청기간 내에 상기 사업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선정하며, 별도 접수 가능
 - ② 정부·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참여하는 사업장
 - ③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큰 사업장
 - ④ 그린버튼 마켓플레이스(한국형 그린버튼) 가입사업장
 - *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그린버튼 마켓 플레이스 (<https://min24.energy.or.kr/gbmarket/>)에 참여사업장으로 가입이 완료되어야함
- 한국에너지공단(이하 “공단”)은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량, 기업규모, 업종 등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수 있음

6. 사업 절차 및 내용



1 사업 신청서 제출

- 사업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사업의 지원조건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 후, <붙임 1>의 에너지진단 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

▶ [온라인 신청] 공단홈페이지(www.energy.or.kr) → 전자민원 → 효율향상 → 7. 에너지진단제도 → 에너지진단제도 ONE-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 (<https://min24.energy.or.kr/nedms>) → 산업진단 지원사업 신청

- 제출서류 : PDF 형식으로 제출

- ① 에너지진단 신청서<붙임1> 1부
-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③ 공장등록증 사본 1부
- ④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하는 연도*의 월별 에너지사용량 입증 서류 1부
 - * 직전 5개년('21년~'25년) 중 300toe~2,000toe 미만에 해당되는 연도의 1년간 월별 전기, 가스, 유류 등 납부고지서, 수납내역 또는 영수증 등
(직전 연도인 '25년 에너지사용량 입증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)
- ⑤ 산업진단 지원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<붙임2> 1부

- 에너지진단의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신청하여야 함

- 사업주는 진단 신청 시 선호 진단기관*을 기재하여 공단에 제출

*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」 제30조(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)에 따라, 에너지관련 기술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여 에너지진단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있는 기관으로서,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기관

- 사업 참여 진단기관의 현황은 에너지진단제도 ONE-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
- 진단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연내에 진단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신청해 줄 것

② 진단 지원대상 선정

- 공단은 사업 신청서 등 신청 서류를 확인하여 진단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함
- 연내에 진단이 가능한 사업장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신청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함

③ 진단기관 선정

- 공단은 선호 진단기관의 일정을 확인 후 가능한 진단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주 및 진단기관에 통보
- 선호 진단기관 수요가 진단기관별 배정한도를 초과하거나, 사업주가 선호 진단기관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이 진단기관을 선정

④ 에너지진단 수행

- 진단기관은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요인을 발굴하고, 에너지 효율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 에너지진단을 수행
- 진단기관은 진단 지원대상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·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진단을 수행하되, 진단의 전 과정은 진단착수일로부터 연속적으로 수행

< 에너지진단의 소요일수 및 소요인력의 기준 >

연간 에너지사용량	소요일수			소요인력 (인)	총 소요일수 및 인력
	현장 진단	보고서 작성	합계		
300 ~ 2,000toe	2	1	3	2	6

⑤ 진단 결과 제공 및 설명

- 진단기관은 사업주에게 에너지진단의 결과물인 에너지진단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, 사업주는 진단보고서와 도출된 개선안에 대하여 확인

⑥ 에너지진단 보고서 제출

- 진단기관은 현장진단 종료 후 14일 이내에 에너지진단 보고서를 공단에 제출
- 공단은 제출받은 보고서를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

7. 진단 사업장 및 진단기관 유의사항

① 진단 사업장

- 사업주는 진단기관이 에너지진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
 - 에너지진단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
 - 대상시설 및 설비의 현장 안내와 설명
 - 측정 및 시험을 위한 준비
 - 그 밖에 에너지진단 업무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사항
-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유형 자산의 소유권은 진단 지원 대상의 사업주에게 양도하고 지적재산권 등 무형 자산은 운영기관과 사업주의 공동 소유이며, 운영기관은 공공의 목적으로 무형적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음

② 진단기관

- 사업 참여 가능 여부는 '24~'25년 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*되며, 신규 지정된 진단기관은 본 공고일 이전까지 산업부문 의무진단 실적이 있는 경우 참여할 수 있음

* '24~'25년 진단기관평가 S~C등급 부여받은 진단기관(산업부문 의무진단 실적 보유)은 사업 참여 가능

- 진단을 실시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이 완료된 후, 다음 연도부터 2년간 진단내용의 이행실태 확인을 실시
- 대상 사업장이 「산업진단 개선이행 지원사업」에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개선 이행 지원사업 사후관리 점검을 병행하여 실시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을 수행하거나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, 진단비용을 지원하지 않거나 기지급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음
- 본 진단 수행 중 제반사고(사업·장비의 손상 및 손실, 인명 피해 등)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

8. 기타사항

- 진단기관의 참여요건, 지원금 지급신청, 에너지진단 방법, 진단보고서 평가, 지급기준 등 동 사업의 진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에너지공단의 '2026년도 산업진단 지원사업 업무지침서'에 따름
- 공고 내용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시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이 추가로 정할 수 있음
- 기타 문의처 :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처 ☎ 052-920-0653

<붙임>

1. 산업진단 지원사업 신청서
2. 산업진단 지원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에너지진단 신청서

사업장명					대표자명			
사업장주소					사업자등록번호			
					법인등록번호			
기업규모	☐ 중소기업 ☐ 중견기업				주요 생산품			
업 종					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(KSIC)			
담당자	성명	직위	부서	전화번호	이메일			
에너지 사용량 (년)	에너지원	()	()	()	연료 계 (toe)	전력 (MWh)	전력 계 (toe)	합 계 (toe)
	사용량							

선호 에너지진단 수행기관(에너지진단전문기관) 및 일정

1순위 (필수 기재)	2순위 (선택 기재)	3순위 (선택 기재)
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에너지진단 가능 일정 : 2026년 월 일 ~ 월 일

당사는 “산업진단 지원사업”에 참여하고자 본 신청서를 제출하며, 추후 당사의 현장진단 및 개선이행 실태조사 등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.

2026년 월 일

신청인(대표) _____ (인)

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

- ※ 구비서류
- 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 - 2. 공장등록증 사본 1부
 - 3. 직전 5개년도(2021~2025년) 중 1개년도 월별 에너지사용량 입증 서류(전기, 가스, 유류 등 납부고지서 또는 영수증) 1부
 - 4. 산업진단 지원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

산업진단 지원사업 진단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

☐ 목적

- ① 한국에너지공단의 「산업진단 지원사업」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“산업진단 지원사업 진단관리시스템”을 통한 신청사업장 및 기업지원 이력 정보의 수집·조회 및 활용
- ② 동 진단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사업장 정보의 확인, 지원효과 분석,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산업 부문 에너지진단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·활용

☐ 수집·조회 및 활용 정보

- ① (지원이력정보)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식별정보 및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 정보
- ② (에너지진단정보) 사업장 에너지진단을 위한 수집 및 결과 등

☐ 수집·조회 및 활용 기관 : 해당 지원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

☐ 동의 효력기간 :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

☐ 기업정보 수집 기간 :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후 5년간

<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>

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앙 정부부처(공 공기관 등) 및 지 자체 (집행기관 포함)	제공 목적	타 중소기업 지원 사업간의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
	제공 항목	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장 식별정보 및 신청일,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 정보 및 에너지진단 결과(개선방안 등)
	보유 이용 기간	기업의 해당 지원사업 참여종료 후 5년간
	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	사업장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앙 정부부처(공공기관 등) 및 지자체(집행기관 포함)의 연계 지원정보 미제공 동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	제공 동의 여부	한국에너지공단이 위와 같이 정보를 좌측의 중앙 정부부처(공공기관 등) 및 지자체(집행기관 포함)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※필수적 정보 (동의함 ☐ 동의하지 않음 ☐)

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사업장 정보를 수집·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6년 월 일

대표자 _____ (인)

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 귀하

※ 본 동의 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 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, 산업진단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